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2023. 10.

목 차

I. 2023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1
II.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3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16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39
III.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61
IV.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과세 체계	74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75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설명자료 ..	76

목 차

V.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83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83
3. 전자문서 API 종류	85
4.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문서 파일 활용	86
5. 연말정산간소화 전자접자 문서 제공	86
6.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제공	87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93

I. 2023년 귀속 전산매체 변경내용 요약

※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별 레코드 수록요령 및 오류검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에는 **음영처리** 또는 **굵게(밑줄)**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내용에 대한 변경 내용은 정오표를 참조)

* 전산매체제출요령 게시 위치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자료실 →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
(작성일: 2023.8.01., 게시번호: 933)

* 전산매체제출요령 게시 종류

- 근로소득(의료비포함) 전산매체제출요령, 사업연말(기부금명세서 포함) 전산매체제출요령
-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종교인소득연말(기부금명세서 포함) 전산매체제출요령
-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거주기타 전산매체제출요령
- 거주사업 전산매체제출요령, 부동산양도소득 전산매체제출요령
- 비거주사업기타 전산매체제출요령, 연금소득(연말정산) 전산매체제출요령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전산매체제출요령, 유가증권양도 전산매체제출요령
- 비과세분리과세 전산매체제출요령, 이자배당소득 전산매체제출요령

[참고] 비과세분리과세는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분리과세, 부동산조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주(현)·종(전) 레코드

○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수정 및 추가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삭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 세액공제를 변경
- 소득·세액 공제명세 레코드
 - 대중교통 이용분 통합, 소비증가분(연간+전통시장) 삭제

2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변경사항 없음

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 10억 초과 구간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II.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1.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개정이유>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율) 4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400만원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만원 ~ 4,6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6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400만원 ~ 5,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5,0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 $\text{Max}\{74\text{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66\text{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 $\text{Max}\{66\text{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50\text{만원}\}$ <신 설>	<input type="checkbox"/>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input type="checkbox"/>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text{Max}\{50\text{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20\text{만원}\}$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세액혜택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64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 퇴직연금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000만원)</td> <td>700만원 (400만원)</td> <td>900만원* (600만원)</td> <td>15%</td> </tr> <tr> <td>1.2억원 이하 (1억원)</td> <td></td> <td></td> <td rowspan="2">12%</td> </tr> <tr> <td>1.2억원 초과 (1억원)</td> <td colspan="2">700만원 (30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td> <td colspan="2">900만원 (600만원)</td> <td>1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 <td colspan="2"></td> <td>1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022.12.31.까지 적용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납입한도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input type="checkbox"/>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등)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input type="checkbox"/>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input type="checkbox"/>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연령 조정 <input type="checkbox"/>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좌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황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 20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 (좌 동) ○ 2022년말까지 1년 연장

<적용시기>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개정이유>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 현황 파악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input type="checkbox"/>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 (좌 동) <삭 제>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제출범위 확대 ○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이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반영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 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input type="checkbox"/>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적용시기> 2023.2.28.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노동조합 회비 기부금 관련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노동조합이 2023.11.30.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2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산하조직에 납부한 '23.10월~12월분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조합비가 1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30% 세액공제)

○ 세액공제 요건

①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② 22.12.31.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미만의 단위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단체 중 연합단체는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공시 필요)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input type="checkbox"/>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5년간 50%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input type="checkbox"/> 10년간 50% <input type="checkbox"/> 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nput type="checkbox"/>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input type="checkbox"/> (감면율) 70%(청년은 90%)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input type="checkbox"/> (대상업종) 농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3.12.31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확대 (좌 동) <input type="checkbox"/>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input type="checkbox"/> (좌 동)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월세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75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사용분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p> <p><신 설></p>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p>* (좌 등)</p> <p>- 2022년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 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 공제율 적용(공제한도 : 100만원)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제한도</th> <th colspan="3">총급여</th> </tr>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 ~1.2억원</th> <th>1.2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Min (총급여 ×20%, 300만원)</td> <td>250</td> <td>200</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td> <td>100</td> <td>100</td> </tr> <tr> <td>대중교통</td> <td>100</td> <td>100</td> </tr> <tr> <td>도서 공연등</td> <td>100</td> <td>-</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 (총급여 ×20%, 300만원)	25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도서 공연등	100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공제한도</th> <th colspan="2">총급여</th> </tr>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 rowspan="2">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 대중교통</td> <td>300</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1.2억원	1.2억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Min (총급여 ×20%, 300만원)	25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도서 공연등	100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																																			
	도서공연등	-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2025.12.31.																																			

<적용시기>

-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금액의 차액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input type="checkbox"/> (좌 등)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적용시기> 20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input type="checkbox"/>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요건) ①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②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input type="checkbox"/>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 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input type="checkbox"/>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input type="checkbox"/> (좌 등)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input type="checkbox"/> (좌 등) ④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input type="checkbox"/> (좌 등)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 (대상) 20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0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input type="checkbox"/>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022.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등) <input type="checkbox"/> 2025.12.31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input type="checkbox"/>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40%)
④ 전통시장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 (공제한도)		○ (좌 동)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적용기한) '25.12.31.		○ (좌 동)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정 * 누적 납입금액의 6%	<input type="checkbox"/>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3.12.31.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24.12.31.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추가 ○ (좌 등)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등) ○ (좌 등)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이하
			위탁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 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본인부담분)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본인부담분)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특별 소득공제	주택 자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p>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 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p>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p>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p> <p>*'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식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p>- '15.1.1. 이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 고정금리: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500만원 ·상환기간 1(년) 이상 &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300만원 <①+②+주택마련저축공제 종합한도 적용></p> <p>- '12.1.1. ~ 14.12.31. 차입분 연 5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비거치식 or 고정금리: 1,500만원)</p> <p>- '11.12.31. 이전 차입분 연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p> <p>-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p> <p><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p>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납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4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	<p>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지만 해당) <p>* 주택마련저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벤처 조합·벤처기업 출자:100%·70%·30%)	<p>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p> <p>※ 공제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p>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정안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15%~80%	<p>·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직불·선불카드</td> <td>30%</td> </tr> <tr> <td>③ 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 <td>30% (40%)</td> </tr> <tr> <td>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 <td>40% (50%)</td> </tr> <tr> <td>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p>*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나이 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구분	비고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⑤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 4년 이하이면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인 적립식 저축을 '23.12.31.까지 가입한 경우에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종합한도 적용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등 조특법 §16① 3,4,6에 따른 투자·출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12.1.1.(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14. 1.1. 이후, 경력단절 여성: '17.1.1. 이후) ~ '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한 업종의 중소기업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 : 100% - '14~'15년 취업자 : 50% - '16~'17년 취업자 : 70% - '18년 이후 소득 : 90%
			구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경력 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산·출산·육아·재교육 사유로 퇴직 ③퇴직한 날부터 2~14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66만원, 74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1/2]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8세 이상)	-	공제대상자녀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 계좌	연금저축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납입한도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은 900만원 한도)
	55천만원 초과	12%			
	퇴직연금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55천만원 이하					15%
	55천만원 초과	12%			
	과학기술인 공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ISA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ISA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도에만 적용
		55천만원 이하	추가납입액×10% (300만원 한도)	15%	
		55천만원 초과		12%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보혐료 납입액×12%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혐료 납입액×15% (연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 료 비	㉠ 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20%·30%)**	총급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한도 없음	-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 제외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 공제 제외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계산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그 외 부양가족	**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는 30% 공제를 적용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등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 공제한도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항목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특별 세액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5% · 3천만원 초과: 25%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10만원 초과 : 기부금의 15/100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대상 한도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일반(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일반 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 공제 *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월할계산)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 → 이월공제 가능)	기부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 세액공제한도 $\frac{\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750만원 한도) 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참고자료

세액 감면 · 공제 적용 순서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정보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④) 특례기부금을 일반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2013년에 지급한 기부금을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 먼저 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⑤)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감면,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참고자료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방법

- 기부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계산 방법

※ 기부금 관련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공제 구분	공제 항목	내 용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 '13년 지출분 중 이월된 기부금 ○ '특별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기부금과 '14년 이후 이월금된 기부 ○ '특별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	

(1)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③ 특례기부금(2013~2022년 지출분)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일반기부금(2013~2022년 지출분)

(2) 다음의 순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

- ① 정치자금기부금 → ② 고향사랑기부금 → ②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2) → ③ 당해연도 특례기부금 →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⑤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2) → ⑥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⑦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2) → ⑧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3)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 한도 및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① 정치자금 기부금	소계	0원	0원 ㉠ + ㉡ + ㉢	0원 ㉠ + ㉡ + ㉢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초과	소계	0원	0원 ㉡ + ㉢	0원 ㉡ + ㉢
		10만원 ~ 3천만원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3천만원) - 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5%
		3천만원 초과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 3천만원, 0)	㉢ 0원 대상금액 × 25%
② 고향사랑 기부금	소계	0원	0원 ㉠ + ㉡	0원 ㉠ + ㉡	
	10만원 이하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10만원)	㉠ 0원 대상금액 × 100/110	
	10만원 ~ 500만원	0원	㉡ 0원 Max(Min(입력금액, 한도 금액, 5백만원) - 10만원, 0)	㉡ 0원 (대상금액 - 10만원) × 15/100	
③ 특례 기부금	소계	0원	0원 ㉠ + ㉡ + ㉢ + ㉣ + ㉤	0원 ㉠ + ㉡ + ㉢ + ㉣ + ㉤	
	'14~'15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3천만원 이하 : 15% ㉢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20% ㉥ 1천만원 초과 : 35%	
	당기분	0원	㉤ 0원 Min(입력금액, 한도-㉠-㉡-㉢-㉣)	㉤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 + ㉦)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④우리스주조합기부금		0원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30%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특례기부금 포함)	0원 Min(입력금액, 한도)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15% ㉟ 1천만원 초과 : 30%	
⑤일반 기부금	소계	0원		0원 ㉟ + ㊱ + ㊲ + ㊳ + ㊴	0원 ㉞ + ㉟ + ㊱ + ㊲ + ㊳	
	종교 단체외 기부금	'14~'15년 이월분	0원		㉟ 0원 Min(입력금액, 한도)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3천만원 이하 : 15% ㉟ 3천만원 초과 : 25%
		'16~'18년 이월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0원	㊱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2천만원 이하 : 15% ㉟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30%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특례기부금 포함)	㊲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㊱)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15% ㉟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㊳ 0원 Min (입력금액, 한도-㉟-㊱-㊲)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20% ㉟ 1천만원 초과 : 35%
		당기	0원		㊴ 0원 Min (입력금액, 한도-㉟-㊱-㊲-㊳)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15% ㉟ 1천만원 초과 : 30%
		소계	0원		0원 ㉟ + ㊱ + ㊲ + ㊳ + ㊴	0원 ㉞ + ㉟ + ㊱ + ㊲ + ㊳
	'14~'15년 이월분	0원		㉟ 0원 Min(입력금액, 한도)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3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3천만원 이하 : 15% ㉟ 3천만원 초과 : 25%	

입력 항목		입력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종교 단체 기부금	'16~'18년 이월분	0원		㊱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2천만원 이하 : 15% ㉟ 2천만원 초과 : 30%
	'19~'20년 이월분	0원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0원	㊲ 0원 Min(입력금액, 한도-㉟-㊱)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15% ㉟ 1천만원 초과 : 30%
	'21~'22년 이월분	0원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①공제대상금액 - ②공제대상금액 - ③공제대상금액 - ④공제대상금액) ×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②공제대상금액에는 13년 이월 특례기부금 포함)	㊳ 0원 Min (입력금액, 한도-㉟-㊱-㊲)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20% ㉟ 1천만원 초과 : 35%
	당기	0원		㊴ 0원 Min (입력금액, 한도-㉟-㊱-㊲-㊳)	㉞ 0원 “(2) 세액공제순서”에 따른 기부금 누계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 * 세액공제액 (㉞) + (㉟) ㉞ 1천만원 이하 : 15% ㉟ 1천만원 초과 : 30%

(4) 지급명세서 기재 방법

- 1) '13년 이월 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재
- 2) 공제대상금액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각 항목별 공제대상금액 기재
- 3) 세액공제액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초과분 구분 기재
 -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종교단체)의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기재

(5)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받지 못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차기 이월됨

사례) 소득금액 70,000,000원, 기부금액 전체 5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1) 기부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이월액 계산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분		기부금액	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초과 이월액
특례	당기	5,000,000	70,000,000	5,00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우리사주		20,000,000	18,000,000	18,000,000	
일반 종교외	당기	3,000,000	12,200,00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8년이월	3,000,000		3,000,000	
일반 종교	당기	5,000,000			5,000,000
	'15년이월	4,000,000		4,000,000	
	'18년이월	3,000,000		200,000	2,800,000
합 계		50,000,000		40,200,000	7,800,000

(2) 결정세액이 “0”이 되는 시점의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액(예시) : 세액 7,950,000원

※ 세액공제 가능액 = 산출세액 - (적용순서의 세액감면~월세액 세액공제까지의 합계)
 = 10,000,000 - (세액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차입금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3) 공제순서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액(7,950,000원)까지의 세액공제액을 계산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공제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공제초과 이월액
특례	당기	5,000,000	5,000,000	15%	750,000	
	'15년이월	3,000,000	3,000,000	15%	450,000	
	'18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우리사주		18,000,000	18,000,000	30%	5,400,000	
일반 종교외	당기	3,000,000	0	30%	0	3,000,000
	'15년이월	2,000,000	2,000,000	15%	300,000	
	'18년이월	3,000,000	2,500,000	30%	750,000	500,000
일반 종교	'15년이월	4,000,000	0	-	0	4,000,000
	'18년이월	200,000	0	-	0	200,000
합 계		40,200,000	32,500,000		7,950,000	7,700,000

(4) 이월액 = 15,500,000원(한도초과이월액 7,800,000원, 공제초과이월액 7,700,000원)

참고자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

Q-1) 청년 甲이 2019.1.1. 입사한 감면대상 중소기업(A)를 2023.6.30.일 퇴사 후,
 7.1. 감면대상 다른 중소기업(B)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90%(한도 200만원) 감면을 적용

- A회사 총급여액 : 10,000,000원
- B회사 총급여액 : 20,000,000원
- 산출세액 : 50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275,000원

A-1)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계산

- ①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적용
- ②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비율}
 = {500,000원 × (30,000,000/30,000,000 × 90%)} = **450,000원**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감면비율*)

= 275,000원 × (1 - 450,000/500,000) = **27,500원**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Q-2) 2019년 5월에 취업한 33세의 청년의 2023년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A-2) 취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므로 2019.5.1.부터 2024.5.31.(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다만, 2017년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Q-3) 감면대상기간 증가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 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청년)의 경우 감면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는지?

A-3)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 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고자 하는 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참고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산출 과정(개정안 반영)

구 분	입력 금액	최저사용 금액	공제 비율	공제 제외 금액	공제 가능 금액	공제 한도	일반 공제 금액	추가 공제 금액	최종 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30%						
㉢ '23.1.월~3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15% + (㉡+㉢)×30%				
㉣ '23.4.월~12월 도서·신문·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40%	아래 참조*1	(㉢+㉣)×40% + (㉤)×50%	아래 참조*2	min[공제 가능금액, 공제 한도]	아래 참조*3	일반공제 금액 + 추가공제 금액
㉤ '23.1.월~3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 공제 제외금액				
㉥ '23.4.월~12월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50%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80%						

*1 [공제 제외 금액] 산출방법

구 분	계산식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 (최저사용금액 - ㉠) × 30%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 (㉢+㉣) × 30% + (최저사용금액 - ㉠ - ㉡ - ㉢) × 40%
신용카드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 (㉢+㉣) × 30% + (㉤+㉥) × 40% + (최저사용금액 - ㉠ - ㉡ - ㉢ - ㉣ - ㉤) × 5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 15% + (㉢+㉣) × 30% + (㉤+㉥) × 40% + ㉦ × 50% + (최저사용금액 - ㉠ - ㉡ - ㉢ - ㉣ - ㉤ - ㉥) × 80%

*2 [공제 한도]

총급여액	공제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3 [추가공제금액] 산출방법 = (① + ② + ③)

①전통시장 추가공제금액	Min (공제가능금액 - 공제 한도(음수이면 "0"), 300만원)
②대중교통 추가공제금액	
③도서·공연 추가공제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원

사 례

【문】 총급여액 6,8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개정안 반영)

○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총 4,600만원 사용)

구 분	사 용 액
신용카드	2,500만원 (대중교통 3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1,300만원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체크카드	800만원 (도서공연 200만원** 포함)
총 계	4,6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해설】

1.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4,600만원이 총급여의 25%(1,700만원)를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953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③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50만원 × 30%) + (150만원 × 40%) = 75만원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2,200만원) × 15% = 330만원

3. 공제 한도 = 600만원

= min(300만원) + min(한도초과액*, 전통시장×40% (50%) + 대중교통×80% + 도서공연×30% (40%), 300만원)

= 300만원 + min(653만원, 188만원+240만원+75만원, 300만원) = 600만원

* 953만원(공제가능금액) - 300만원(공제 한도액) = 653만원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min(2, 3) = 6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개정안 서식)

거주자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 구분	⑤ 소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카드	⑦ 직불·선불카드등	⑧ 현금영수증	⑨도서·공연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차간기제)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교통이용분
									⑨-1 1-3월	⑨-2 4-12월	⑩-1 1-3월	⑩-2 4-12월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⑮전통시장사용분 공제금액		⑯대중교통이용분 공제금액 (⑪×80%)	⑰ 공제제외금액 계산					
		⑭-1 (⑨-1×30%)	⑭-2 (⑨-2×40%)	⑮-1 (⑩-1×40%)	⑮-2 (⑩-2×50%)		⑰-1 총급여	⑰-2 최저 사용금액 [(⑰-1)×25%]	⑰-3 공제 제외 금액			

⑱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⑯)-(⑰-3)]	⑳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50만원 원, 300만원]	㉑ 일반 공제금액(⑱) 과 ㉒ 중 적은 금액	㉒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가능 금액 [(⑱>㉒)인 경우에 (⑭+⑮+⑯)]	㉓ 추가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300만원]	㉔ 추가 공제금액 (㉑)과 ㉒ 중 적은 금액	㉕ 최종 공제금액 (㉑+㉔)
⑰-3 계산						
구분	계산식					⑰-3
⑥ ≥ (⑰-2)	(⑰-2) × 15%					
⑥ + ⑦ + ⑧ + (⑨-1) ≥ (⑰-2) > ⑥	⑥ × 15% + {(⑰-2) - ⑥} × 30%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 (⑰-2) > ⑥ + ⑦ + ⑧ + (⑨-1)	⑥ × 15% + {⑦+⑧+(⑨-1)} × 30% + {(⑰-2)-(⑥-⑦-⑧-(⑨-1))} × 40%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 (⑩-2) ≥ (⑰-2) >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⑥ × 15% + {⑦+⑧+(⑨-1)} × 30% + {(⑨-2)+(⑩-1)} × 40% + {(⑰-2)-(⑥-⑦-⑧-(⑨-1)-(⑨-2)-(⑩-1))} × 50%					
(⑰-2) >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 (⑩-2)	⑥ × 15% + {⑦+⑧+(⑨-1)} × 30% + {(⑨-2)+(⑩-1)} × 40% + {(⑰-2)-(⑥-⑦-⑧-(⑨-1)-(⑨-2)-(⑩-1)-(⑩-2))} × 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 "① 내·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⑨란에서 차감하고 "⑩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⑥ ~ ⑨란의 금액은 부동소수점대수·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선불카드등"란, "⑧ 도서·공연등 사용분"란, "⑨ 전통시장사용분"란, "⑩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⑩, ⑪, ⑫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 "⑩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신문·영화·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⑰-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㉑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⑳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 도서·공연등 사용분과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㉒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2023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	구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다만, 조특법 §16조① 3,4,6호에 따른 출자·투자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도서·공연 등 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총급여 1억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 [공통] 전산매체 파일 길이 변경
- A~I레코드: 2,010바이트(2022년 귀속: 2,010바이트)

- [비과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소득옵션 세제지원 강화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삭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56	⑱-1 P01-비과세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의 소득 -한도: 월 20만원	1.비과세식사대(P01) < 0 이면 오류 2.비과세식사대(P01) > MIN(근무월수+1, 12)×20만원 이면 오류 3.비과세식사대(P01) > MIN(근무월수, 12)×20만원 이면 경고
C61	⑳-31 U0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소득 -한도: 연 2억원 -누적한도* :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2023.1.1. 이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연간 한도는 2억원, 누적 한도는 5억원)	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0 이면 오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2억원이면 오류
C116	㉓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의한 세액감면 ·감면세액계산: MIN(①+②, 200만원) ① 산출세액 × $\frac{70\% \text{ 감면급여계 } \times 70\%}{\text{총급여}}$ ② 산출세액 × $\frac{90\% \text{ 감면급여계 } \times 90\%}{\text{총급여}}$ * ①,②의 감면세액은 200만원 한도	1.[C116] > [C113] 이면 오류 2.[C68] + {모든 종(전)의 [D57]의 합} = 0 인 경우: [C116] ≠ 0 이면 오류 3.[C116] > MIN(①+②, 200만원) 이면 오류 ①=[C113]×{[C68]②}+{모든 종(전)의 [D57]②의 합}/[C72]×70% ②=[C113]×{[C68]⑥}+{모든 종(전)의 [D57]⑥의 합}/[C72]×90%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04	㉔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문턱(최저사용금액) : 총급여(항목72)의 25%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②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1.[C104]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4.신용카드등 사용금액(항목72) < [C72]×25%인 경우: [C104] > 0 이면 오류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등, 신용카드 5.[C104]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이면 오류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 계산값 = 소득·세액 공제명세(E레코드)의 본인(관계코드=0), 배우자(관계코드=3) 및 직계존비속(관계코드=1,2,4,5)의 MIN(㉔⑧)+㉔ 계산값의 합계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 합 최대 300만원 한도 추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율: 총급여 25% 초과사용에 대해 적용		
결재수단 및 추가공제 구분		사용액
신용카드		15%
직불카드등		30%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등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이용분		80%
<p>※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결재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공제</p> <p>※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카드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공제</p>		
<p>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 40%</p> <p>②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 80%</p> <p>③ 도서·공연 등 사용분 공제금액 = 도서·공연 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 30%</p> <p>④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 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p> <p>⑤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5%</p> <p>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공제율 적용금액 경우: ⑥ = 최저사용금액 × 15% · 15%공제율 적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30% 공제율 사용금액: ⑥ = 15% 공제율 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 - 15% 공제율 사용금액) × 30% · 15% + 30% 공제율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30% + 40% 공제율 사용금액: ⑥ = 15% 공제율 사용금액 × 15% + 30% 공제율 사용금액 × 30% + (최저사용금액 - (15% + 30% 공제율 사용금액)) × 40% · 15% + 30% + 40% 공제율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30% + 40% + 80% : ⑥ = 15% 공제율 사용금액 × 15% + 30% 공제율 사용금액 × 30% + 40% 공제율 사용금액 × 40% + (최저사용금액 - (15% + 30% + 40% 공제율 사용금액)) × 80%</p> <p>⑦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MAX(①+②+③+④+⑤-⑥, 0)</p> <p>⑧ [C72] ≤ 7천만원인 경우: 300만원 [C72] > 7천만원인 경우: 250만원</p> <p>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 금액 · ((⑦-⑧) ≤ 0 인 경우 : ⑨ = 0 · ((⑦-⑧) > 0 일 때 0 < [C72] ≤ 7천만원인 경우 : ⑨ = MIN((⑦-⑧), ①+②+③, 300만원) [C72] > 7천만원인 경우 : ⑨ = MIN((⑦-⑧), ①+②, 200만원)</p>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13	⑤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 ② 총급여) × 19%	1. [C113] < 0 이면 오류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13] ≠ [C112] × 19% 이면 오류 3. [C113] ≠ 산출세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산출세액 계산값 = [C112] ×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 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15%) - 1,260,000</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24%) - 5,760,000</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35%) - 15,440,000</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38%) - 19,940,000</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40%) - 25,940,00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42%) - 35,940,000</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종합소득과세표준 × 45%) - 65,940,000</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15%) -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24%) -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35%) -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38%) -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40%) -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15%) -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24%) -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35%) -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38%) -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40%) -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 42%) - 35,940,000																	
10억원 초과	(종합소득과세표준 × 45%) - 65,940,000																	

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21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②번 계산값)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적용	1. [C121] < 0 이면 오류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21] ≠ 0 이면 오류 3. [C121] > [C113] - [C120] 이면 오류 4. [C121] >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값 × (1 - [C116] / [C113]) 이면 오류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세액공제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td> <td>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0.5]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td> </tr> <tr> <td>12억원 초과</td> <td>50만원 - [(총급여 - 12억원) × 0.5]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td> </tr> </tbody> </table> <p>② 감면급여비율*) 적용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값(①)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액(항목116)] / [산출세액(항목113)])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p>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총급여액	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 →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0.5]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12억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 - 12억원) × 0.5] →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5.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24 ~ C127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공통 사항] ·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음 *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납입 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차감순서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퇴직연금> ISA연금저축 순	
	총급여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퇴직연금 또는 ISA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15%
	5.5천만원 초과	12%
C124 ①	⑤8 연금계좌_과학 기술인 공제 회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대상 금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C124①]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24①]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24①] ≠ 0 이면 오류 4.[C124①]+[C125①]+[C126①] > 900만원 이면 오류
C125 ①	⑤9 연금계좌_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대상 금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C125①]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25①]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25①] ≠ 0 이면 오류 4.[C124①]+[C125①]+[C126①] > 900만원 이면 오류
C126 ①	⑥0 연금계좌_연금저축_공제대상 금액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1.[C126①]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26①]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26①] ≠ 0 이면 오류 4.[C126①] > 600만원 이면 오류

6.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31 ①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취학전아동과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900만원 한도 -본인: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1인당 연300만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300만원,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 아닌 부양가족에 계수생): 300만원)	1.[C131①]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1①]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1①] ≠ 0 이면 오류 4.[C131①]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합계 ^{*)} } 이면 오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합계 = 소득·세액 공제명세(레코드의 교육비 지출금액 중 교육비 한도 내 공제대상금액의 합계

7. [특별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34 ①	⑥4-①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 이하_공제대상금액	· 근로소득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포함 1.[C134①]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4①]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4①] ≠ 0 이면 오류 4.[C134①] > 10만원이면 오류 5.[C134①] > [C74] - [C132①] - [C133①] 이면 오류 6.([C134①]+[C135①])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이면 오류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기부금 조정명세(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3 and H10=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C134 ②	⑥4-②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 이하_세액공제액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1.[C134②]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4②]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4②] ≠ 0 이면 오류 4.[C134②] > [C134①] × 100 / 110 이면 오류 5.[C134②] > 90,909원 이면 오류 6.[C134②] > [C113 - C120 - C121 - C122⑤ - C123⑤ - C128⑤ - C129⑤ - C130⑤ - C131⑤ - C132⑤ - C133⑤] 이면 오류
C135 ①	⑥4-③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 초과_공제대상금액	· 근로소득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 대상 금액 -공제한도: Min(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5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1.[C135①] < 0 이면 오류 2.[C134① + C135①] > 500만원 이면 오류 3.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5①] ≠ 0 이면 오류 4.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5①] ≠ 0 이면 오류 5.[C135①] > [C74] - [C132①] - [C133①] - [C134①] 이면 오류 6.([C134①]+[C135①])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이면 오류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기부금 조정명세(H레코드) 중 고향사랑기부금(H9)=43 and H10=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C135 ②	⑥4-④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고향사랑기부금_10만원 초과_세액공제액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세액공제 1.[C135②]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5②]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 = ‘2’)인 경우: [C135②] ≠ 0 이면 오류 4.[C135②] > [C135①] × 15% 이면 오류 5.[C135②] > [C113 - C120 - C121 - C122⑤ - C123⑤ - C128⑤ - C129⑤ - C130⑤ - C131⑤ - C132⑤ - C133⑤] 이면 오류

8.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36 ㉔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특례기부금_공제대상금액	1.[C136㉔]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6㉔]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6㉔] ≠ 0 이면 오류 4.[C136㉔]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이면 오류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2014년 이후 특례기부금(H9)='10' and [H10]='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5.[C136㉔] > [C74] - [C132㉔] - [C133㉔] - [C134㉔] - [C135㉔] 이면 오류
C136㉕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특례기부금_세액공제액	1.[C136㉕]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6㉕]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6㉕] ≠ 0 이면 오류 4.[C136㉕] > MIN(1천만원, [C136㉔]) × 15% + MAX {0, (([C136㉔] - 1천만원)) × 30% 이면 오류 * 2023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21년, 2022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019년, 2020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2018년, 2017년, 2016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2015년, 2014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5.[C136㉕] > [C113 - C120 - C121 - C122㉕ - C123㉕ - C128㉕ - C129㉕ - C130㉕ - C131㉕ - C132㉕ - C133㉕ - C134㉕ - C135㉕ - C142 - C143 - C145㉕] 이면 오류
C137㉔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우리스주조합기부금_세액공제액	1.[C137㉔]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㉔]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㉔] ≠ 0 이면 오류 4.[C137㉔]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1'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0'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C137㉕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우리스주조합기부금_세액공제액	1.[C137㉕]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㉕]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㉕] ≠ 0 이면 오류 4.[C137㉕]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액 계산값 = [C74] - [C132㉕] + C133㉕ + C134㉕ + C135㉕ + C136㉕ + C137㉕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있는 경우: ㉔ × 10% + MIN(㉔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없는 경우: ㉔ × 30%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1'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0'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C137㉖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일반기부금_세액공제액	1.[C137㉖]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㉖]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㉖] ≠ 0 이면 오류 4.[C137㉖] ≠ 우리스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우리스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우리스주조합기부금 (H9)='42' and [H10]='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5.[C137㉖] > [C74 - C132㉖ - C133㉖ - C134㉖ - C135㉖ - C136㉖] × 30% 이면 오류

C137㉗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일반기부금_세액공제액	1.[C137㉗]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7㉗]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㉗] ≠ 0 이면 오류 4.[C137㉗] > 우리스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우리스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값 = [C136㉗] + [C137㉗] ≤ 1천만원 이면 [C137㉗] × 15% [C136㉗] + [C137㉗] > 1천만원, [C136㉗] > 1천만원 이면 [C137㉗] × 30% [C136㉗] + [C137㉗] > 1천만원, [C136㉗] ≤ 1천만원 이면 (1천만원 - [C136㉗]) × 15% + (([C136㉗] + [C137㉗]) - 1천만원) × 30% 5.[C137㉗] > [C113 - C120 - C121 - C122㉗ - C123㉗ - C128㉗ - C129㉗ - C130㉗ - C131㉗ - C132㉗ - C133㉗ - C134㉗ - C135㉗ - C141 - C142 - C143 - C145㉗ - C136㉗] 이면 오류
C138㉔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일반기부금_공제대상금액	1.[C138㉔]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8㉔]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8㉔] ≠ 0 이면 오류 4.[C138㉔]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2014년 이후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H9)='40' and [H10]='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5.[C138㉔] >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계산값 ^{*)} 이면 오류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계산값 = [C74] - [C132㉔] + C133㉔ + C134㉔ + C135㉔ + C136㉔ + C137㉔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있는 경우: ㉔ × 10% + MIN(㉔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없는 경우: ㉔ × 30%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1'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0'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C138㉕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일반기부금_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_세액공제액	1.[C138㉕] < 0 이면 오류 2.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8㉕] ≠ 0 이면 오류 3.비거주자([C7]='2')인 경우: [C138㉕] ≠ 0 이면 오류 4.[C138㉕]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액 계산값 ^{*)} 이면 오류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세액공제액 계산값 = [C74] - [C132㉕] + C133㉕ + C134㉕ + C135㉕ + C136㉕ + C137㉕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있는 경우: ㉔ × 10% + MIN(㉔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이 없는 경우: ㉔ × 30%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1'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레코드) 중 기부 유형(H9)='40'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p>- '21년 이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p> <p>- '19~'20년 이월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p> <p>- '18년~'16년 이월 기부금 :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p> <p>- '15년~'14년 이월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p>	<p>{1천만원-(C136㉔)+(C137㉔)} × 15% + {(C136㉔)+(C137㉔)+(C138㉔)} - 1천만원} × 30%</p> <p>·2023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021년, 2022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019년, 2020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018년, 2017년, 2016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2015년, 2014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p> <p>5. [C138㉔] > [C13-C120-C121-C122㉔-C123㉔-C128㉔-C129㉔-C130㉔-C131㉔-C132㉔-C133㉔-C134㉔-C135㉔-C142-C143-C145㉔-C136㉔-C137㉔] 이면 오류</p>
C139㉔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일반기부금_(종교단체)_공제대상금액	<p>·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종교단체)과 14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합계 · 15년 이월 일반기부금은 특별소득공제 항목 중 기부금(이월분) 항목에 기입 -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 + MIN(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 기부금등합계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 + 특례기부금(이월분 포함) 공제대상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대상금액 * 공제대상금액 한도계산 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 포함</p>	<p>1. [C139㉔] < 0 이면 오류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9㉔] ≠ 0 이면 오류 3. 비거주자([C7]='2')인 경우: [C137㉔] ≠ 0 이면 오류 4. [C139㉔]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계산값 = 기부금 조정명세(헤더) 중 2014년 이후 일반기부금(종교단체)(H9)='41' and (H10)='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해당 연도 공제금액 (H15) 합계 5. [C139㉔] > 일반기부금 공제한도 계산값^{*)} - [C138㉔] 이면 오류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공제한도 계산값 ㉔ (근로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C74] - [C132㉔] + [C133㉔] + [C134㉔] + [C135㉔] + [C136㉔] + [C137㉔]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㉔ × 10% + MIN(㉔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㉔ × 30% * 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더) 중 기부 유형(H9)이 '41'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 ** 종교단체 외 기부금: 기부금 조정명세(헤더) 중 기부 유형(H9)이 '40'인 해당연도 공제금액(H15) 합계</p>
C139㉔	㉔-㉔ 특별세액공제_기부금_(종교단체)_세액공제액	<p>· 특례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포함),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14년 이후 이월된 일반기부금 포함)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순서에 맞춰 기부연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세액공제율(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율 적용)</p> <p>- '23년 이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p> <p>- '21년 이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5</p>	<p>1. [C139㉔] < 0 이면 오류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39㉔] ≠ 0 이면 오류 3. 비거주자([C7]='2')인 경우: [C139㉔] ≠ 0 이면 오류 4. [C139㉔]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세액공제액 계산값^{*)} 이면 오류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세액공제액 계산값 · [C136㉔]+[C137㉔]+[C138㉔]+[C139㉔] ≤ 1천만원 이면 [C139㉔] × 15% · [C136㉔]+[C137㉔]+[C138㉔]+[C139㉔] > 1천만원, [C136㉔]+[C137㉔]+[C138㉔] > 1천만원 이면 [C139㉔] × 30% · [C136㉔]+[C137㉔]+[C138㉔]+[C139㉔] > 1천만원, [C136㉔]+[C137㉔]+[C138㉔] ≤ 1천만원 이면 {1천만원-(C136㉔)+(C137㉔)+(C138㉔)} × 15% + {(C136㉔)+(C137㉔)+(C138㉔)+(C139㉔)} - 1천만원} × 30%</p>

		<p>- '19년 이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p> <p>- '18년~'16년 이월 기부금 : 2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p> <p>- '15년~'14년 이월 기부금 : 3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5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5</p>	<p>·2023년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021년, 2022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2019년, 2020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018년, 2017년, 2016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2015년, 2014년 이월 기부금을 공제받을 경우, 기부금 발생연도의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p> <p>5. [C139㉔] > [C13-C120-C121-C122㉔-C123㉔-C128㉔-C129㉔-C130㉔-C131㉔-C132㉔-C133㉔-C134㉔-C135㉔-C142-C143-C145㉔-C136㉔-C137㉔] 이면 오류</p>
--	--	--	---

9. [특별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141	㉔표준세액공제	<p>·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상환세액에서 공제 · ①, 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후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 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이하분, 정치자금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 정치자금세액공제(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p>	<p>1. [C141] < 0 이면 오류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C12]='9', [C9]='1')인 경우: [C141] ≠ 0 이면 오류 3. 비거주자([C7]='2')인 경우: [C141] ≠ 0 이면 오류 4. [C141] > 13만원 이면 오류 5. [C141] ≤ 13만원 and [C141] > 0 일 때 ① [C87㉔]+[C88㉔]+[C89]+[C90]+[C91]+[C92]+[C93] ≠ 0 이면 오류 ② [C128㉔]+[C129㉔]+[C130㉔]+[C131㉔]+[C136㉔]+[C138㉔]+[C139㉔] ≠ 0 이면 오류 ③ [C145㉔] ≠ 0 이면 오류 6. [C141] < 13만원 and [C141] > 0 일 때 [C147㉔] > 0 이면 경고</p>

9. 종전근무지

[비과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항목 추가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D45	㉔-1 P01-비과세 식사대	<p>· [소득세법 제12조]의 소득 - 한도: 월 20만원</p>	<p>1. 비과세식사대(P01) < 0 이면 오류 2. 비과세식사대(P01) > MIN(근무월수+1, 12) × 20만원 이면 오류 3. 비과세식사대(P01) > MIN(근무월수, 12) × 20만원 이면 경고</p>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D50	⑬-31 U0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소득 -한도: 연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2023.1.1. 이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연간 한도는 2억원, 누적한도는 5억원)	1.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0이면 오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U01) > 2억원이면 오류

10. 소득세액공제명세

- 대중교통 이용분 통합, 소비증가분(연간+전통시장) 삭제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E35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대중교통 이용금액(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제로페이)사용금액 포함)·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1.[E35] < 0 이면 오류 2.관계코드가 ('6','7','8')인 경우 [E35] > 0 이면 오류 3.[E35] ≥ 1억원이면 경고
E36	기부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10만원 이하, 초과 합계금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된 국세청 증명서류의 기부금 지출금액 합계를 기재)	1.기부금 < 0 이면 오류 2.([E36] + [E58]) ≠ 해당 연도 기부금액 합계* 이면 오류 *해당 연도 기부금액 합계 = 해당 연도 기부명세(레코드)의 기부자별 기부금합계금액(I6)의 합산값
E37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38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39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40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41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57 E92 E114 E149 E171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대중교통 이용금액(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제로페이)사용금액 포함)·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1.[E57] < 0 이면 오류 2.관계코드가 ('6','7','8')인 경우: [E57] > 0 이면 오류 3.[E57] ≥ 1억원이면 경고
E58 E93 E115 E150 E172	기부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의 기부금액(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10만원 이하, 초과 합계금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된 국세청 증명서류의 기부금 지출금액 합계를 기재)	1.기부금 외 < 0 이면 오류 2.([E36] + [E58]) ≠ 해당 연도 기부금액 합계* 이면 오류 *해당 연도 기부금액 합계 = 해당 연도 기부명세(레코드)의 기부자별 기부금합계금액(I6)의 합산값
E59 E94 E116 E151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E60 E95 E117 E152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61 E96 E118 E153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62 E97 E119 E154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E63 E98 E120 E155	공란	숫자 0으로 10자리를 반드시 채움	'0000000000' 아니면 오류

11. 고향사랑기부금 코드추가 및 기부금 명칭변경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H9	코드	10	특례기부금	기부유형코드 (‘10’, ‘20’, ‘40’, ‘41’, ‘42’, ‘43’)가 아니면 오류
		20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40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41	일반기부금(종교단체)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43	고향사랑기부금	
I7	⑦코드	코드	기부유형	1.기부유형코드가 (‘10’, ‘20’, ‘40’, ‘41’, ‘42’, ‘43’) 아니면 오류 2.기부유형코드가(‘20’, ‘42’, ‘43’)인 경우: 관계코드가 본인 아니면([I11] ≠ ‘1’) 오류 3.기부금조정명세(H레코드)에 기부연도 ‘2023’인 기부유형코드(I7)의 자료가 없으면 오류
		10	특례기부금	
		20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40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41	일반기부금(종교단체)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43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②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⑤ 소재지(주소) ⑥ 성명 ⑧ 주소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분	주(현)	중(전)	중(전)	⑩-1 납세조합	합계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여	여				
	⑭ 상여	여				
	⑮ 인정상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및 감면소득명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출산·보육수당	QOX				
	⑬-4 연구보조비	HOX				
	⑬-5					
	⑬-6					
	~					
	⑬-40 비과세세대	P01				
	⑭ 수련보조수당	Y22				
	⑯ 비과세소득계					
	⑯-1 감면소득계					
III 세액명세	구분	⑦⑨ 소득세		⑧⑩ 지방소득세	⑧⑩ 농어촌특별세	
기납부액	⑦④ 중(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용하다)	사업자 등록번호				
	⑦⑤ 주(현)근무지					
	⑦⑥ 납부특례세액					
	⑦⑦ 차감징수세액(⑦③-⑦④-⑦⑤-⑦⑥)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②① 총급여(①⑥,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④⑨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② 근로소득공제		⑤⑩ 산출세액		
②③ 근로소득금액		⑤① 「소득세법」		
기본공제	②④ 본인 ②⑤ 배우자 ②⑥ 부양가족(명)	⑤② 「조세특례제한법」(⑤③ 제외)		
추가공제	②⑦ 경로우대(명) ②⑧ 장애인(명) ②⑨ 부녀자 ③⑩ 한부모가족	⑤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연급보합공제	③① 국민연금보험료 ③② 전입공제 ③③ 전입공제 ③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 ③⑤ 별정우체국연금 ③⑥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③⑦ 고용보험료 ③⑧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③⑨ 장기주택 저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③⑩ 2015년 이후 차입분	⑤④ 조세조약		
종합 소득 공제	③⑩ 국민연금보험료 ③⑪ 공제금액 ③⑫ 공제금액 ③⑬ 공제금액 ③⑭ 공제금액 ③⑮ 공제금액 ③⑯ 공제금액 ③⑰ 공제금액 ③⑱ 공제금액 ③⑲ 공제금액 ③⑳ 공제금액 ③㉑ 공제금액 ③㉒ 공제금액 ③㉓ 공제금액 ③㉔ 공제금액 ③㉕ 공제금액 ③㉖ 공제금액 ③㉗ 공제금액 ③㉘ 공제금액 ③㉙ 공제금액 ③㉚ 공제금액 ③㉛ 공제금액 ③㉜ 공제금액 ③㉝ 공제금액 ③㉞ 공제금액 ③㉟ 공제금액 ③㊱ 공제금액 ③㊲ 공제금액 ③㊳ 공제금액 ③㊴ 공제금액 ③㊵ 공제금액 ③㊶ 공제금액 ③㊷ 공제금액 ③㊸ 공제금액 ③㊹ 공제금액 ③㊺ 공제금액 ③㊻ 공제금액 ③㊼ 공제금액 ③㊽ 공제금액 ③㊾ 공제금액 ③㊿ 공제금액	⑤⑤ 세액감면계		
특별 소득 공제	③㉞ 2011년 이전 차입분 ③㉟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③㊱ 2015년 이후 차입분 ③㊲ 15년 이상 ③㊳ 10년 고정금리 이거나, -15년 비거치상환 대출 ③㊴ 15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③㊵ 10년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⑤⑥ 근로소득 ⑤⑦ 자녀 ⑤⑧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른 퇴직연금 ⑤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퇴직연금 ⑤⑩ 연금저축 ⑤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명기 시 연금계좌 납입 액 ⑤⑫ 보험료 ⑤⑬ 의료비 ⑤⑭ 교육비 ⑤⑮ 정치 자금 기부금 ⑤⑯ 고령 사망 기부금 ⑤⑰ 특별 기부금 ⑤⑱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 ⑤⑲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⑤⑥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입양자 (명) ⑤⑦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⑧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⑨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⑩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⑪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⑫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⑬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⑭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⑮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⑯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⑰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⑲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⑳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㉑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㉒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㉓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㉔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㉖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㉗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㉙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㉚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㉛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㉝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㉟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㊲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㊳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㊵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㊶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㊷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㊹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㊺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㊻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㊽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㊾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㊿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그밖 의 소득 공제	④① 청약저축 ④②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④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④④ 투자조합출자 등 ④⑤ 신용카드등 사용액 ④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④⑦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④⑧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④⑩ 그 밖의 소득공제계	⑤⑲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⑤⑳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㉑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㉒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㉓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㉔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㉖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㉗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㉘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㉙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㉚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㉛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㉝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㉞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㉟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㊲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㊳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㊵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㊶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㊷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㊹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㊺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㊻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㊽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㊾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㊿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④⑩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⑤⑳ 결정세액(⑤①-⑤⑩-⑤⑰)		
		㉑ 실효세율(%) (⑤⑲/②①)×100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유대	출산 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0	(근로자 본인)	○				기타 계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㉑ 근무처명"란 및 "㉒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전화번호→국제전화/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을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일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일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㉒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㉓-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현)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㉔-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㉔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㉕ 총급여"란에는 "㉔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㉔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㉖-㉗)"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㉘-㉙)"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㉚-㉛-1)"란과 "특별세액공제(㉜-㉝)"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㉚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㉜ 주택자금공제(㉞+㉟), ㉚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㉞+㉟+㉚), 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㉞ 차감소득금액에서 ㉟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㉚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㉞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총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이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㉚실효세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㉜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㉚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임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다)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지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㉜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㉚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자감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통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08-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 12 3 자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08-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0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0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08-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08-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08-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08-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08-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08-6	소득령 § 12 14 (취제수당)	○
		H12	08-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08-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08-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비과세	I01	08-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모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08-10	직전일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충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08	소득령 § 16 0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08	소득령 § 16 0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08	소득령 § 16 0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001	08-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08-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001	08-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08-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여	R11	08-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소득세법 § 12 3 저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실급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S01	08-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08-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Y02	08-14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조특법 § 88의4⑥	Y03	08-15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08-16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09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08-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08-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19	T30	08-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T40	08-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조특법 § 29조의6	T41	08-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08-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08-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 § 18조의3	T50	08-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T11	08-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조특법 § 30	T12	08-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08-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08-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미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미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미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약직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5. 주택미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미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별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8.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Table with 8 columns: ⑦ 임대인 성명(상호), ⑧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개시일, 종료일),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원)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Table with 6 columns: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⑲ 원금, ⑳ 이자, ㉑ 공제금액

2) 임대차 계약내용

Table with 6 columns: ㉓ 임대인 성명(상호), 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개시일, 종료일), ㉙ 전세보증금(원)

* ㉕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 방법

-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관리번호, 근로소득자 구분, 국내/국외/합계, 구분, ⑨~⑳ 근로소득, ㉑~㉙ 세액공제, ㉚~㉜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㉞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 상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상호	⑨ 의료비코드	⑩ 건수	⑪ 금액	⑫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해당 여부		⑬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합계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자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작성 방법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같은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제정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 본인 등 해당 여부란은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에 "○"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국제정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제정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급여 본인부담금①'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⑫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해당 여부 및 ⑬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란은 의료비 지급내용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및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 표시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참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요 제출 오류

- 레코드 길이 오류가 많음
 - 2023년 귀속은 2,010바이트임
- 레코드 구성과 순서를 정확하게 구현
 - A(제출자) B(원천징수의무자) C(주현) D(종전) E(소득공제명세) F(연금저축등) G(월세액등) H(기부금조정명세) I(해당연도기부명세)
 - 하나의 레코드에 종속되는 정보를 다른 레코드에 종속시키면 안됨
- 금액, 세액 항목 등에 숫자만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에 반영
- 성명, 상호 등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레코드길이가 달라질 수 있음
 - 한글, 영문, 숫자, (), Space 만 가능
- 전화번호에 특수문자를 기재 하지 않도록 유의
- 원천징수의무자 및 제출자가 사업자등록번호(10)로 되어 있는지 확인바람
 -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민등록번호인 경우는 극히 미미

(안내문구)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 문구 삽입 바람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전산매체 수록 불가(오류로 판단)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입력해야함
 -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안내문구 필요
- 중복제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중복공제 되지 않도록 안내 필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때는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복 제출
 - 홈택스,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중복 제출
 - 홈택스 부서사용자ID 등 다른 ID로 중복 제출
 - 수시분으로 제출하고 연간합산분으로 다시 중복 제출
- 지급명세서를 중복 제출했다면 세금신고 삭제(또는 전자신고 삭제) 요청서로 이증자료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 또는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오류
 - 해당 귀속연도에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를 2곳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근무지를 반드시 입력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가 중복공제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

Ⅲ.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 사업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54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표준</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이하</td> <td>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억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억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① [C54] < 0 이면 오류 ② [C54] ≠ (종합소득과세표준[C53]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값) 이면 오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55	자녀세액 공제인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관계코드 4) 및 위탁아동(관계코드 8)의 인원수 - 만 8세 이상인 자의 수	① [C55]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11]='2')일 때: [C55]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11]='1')일 때 : [C55] > {부양가족(E레코드) 중 직계비속 및 위탁아동(관계코드 4,8)의 인원수} 이면 오류

3. [세액공제] C61 공란 길이 변경(20→10)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1	공란	"0"으로 10자리 수록

4.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2 ④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p>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p> <p>* 다만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시 추가 세액 공제 및 한도 추가 -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한도) 세액공제 추가</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소득금액 [C33]</th> <th>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퇴직연금합산시 한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500만원 이하</td> <td>600만원(900만원) + 300</td> <td>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td> <td>12%</td> </tr> </tbody> </table>	사업소득금액 [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 300	15%	4,500만원 초과		12%	<p>① [C62] < 0 이면 오류</p> <p>② 비거주자([C11]='2')일 때 [C62] ≠ 0 이면 오류</p> <p>③ 거주자([C11]='1')일 때 한도 체크</p> <p>(v) [C33] > 4500만원 일 때 : [C62] > 144만원 이면 오류</p> <p>(^) [C33] ≤ 4500만원 일 때 : [C62] > 180만원 이면 오류</p>
사업소득금액 [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 (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 300	15%									
4,500만원 초과		12%									

5.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64 ④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금액	<p>·공제대상금액 -사업소득자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공제 한도 : 사업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최대10만원) ·세액공제금액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p>	<p>①[C64] < 0 이면 오류</p> <p>②비거주자([C11]='2')일 때: [C64] ≠ 0 이면 오류</p> <p>③[C64] > 90,909 이면 오류</p>

6. 해당연도 기부명세 레코드 - 기부처 검증 추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G9 ⑪사업자(주민) 등록번호	<p>·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록) ·기부처 사업자번호 기재 시 좌측 정렬 후 우측에 공백 기재 ·정치자금기부금('20')일 경우 생략 가능 ·회사일괄기부금일 경우 기재 금지</p>	<p>①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단, 정치자금기부금([G7]='20')인 경우 공란(Space) 가능, 회사일괄기부금([G10]="회사일괄기부금")인 경우 공란(Space) 아니면 오류)</p> <p>②잘못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오류</p> <p>③기부장려금신청금액[G18] > 0 인 경우,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오류</p> <p>④기부처 사업자(주민)등록번호[G9] = 소득자 주민등록번호[G6] 이면 오류</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3)] <개정 2023. 3. 20.>

관리번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소득자 구분				
①구속연도	년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② 법인명(상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⑥ 소재지(주소)	④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자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⑩ 주민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⑩ 사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 (연·월·일)	⑰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중(전)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⑱ 수입금액(⑰)	⑲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124)합계									
㉒ 사업소득금액(㉑)		㉓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 적 공 제	기본 공 제	㉔ 본 인	㉕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㉖ 결정세액				
		㉔ 배우자	㉗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㉕ 부양가족 (명)	㉘ 소득공제 등 중 합한도 초과액		가 분 세 액	㉙(전) 근무지			
	추가 공 제	㉕ 경로우대 (명)	㉚ 종합소득과세표준		㉙(후) 근무지				
		㉕ 장애인 (명)	㉛ 산출세액		㉚ 차감 납부할 세액				
		㉕ 자녀 세액 공제	㉜ 공제대상자녀 (명)						
㉕ 한부모가족		출산·임양자 (명)							
㉒ 연금보험료공제		㉜ 연금계좌 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㉓ 기부금(이월분)		특례기부금		세무서장 귀하					
		㉜ 기부 금 세 액 공 제							
㉔ 종합소득공제 계		정치자금							
㉔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㉜ 표준세액공제							
㉕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코드 4 제외)=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5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 간 총 지급건수	⑥ 연 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⑩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세	⑳ 지방 소득세	㉑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소득 부징수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건별 소득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되는 건수·금액은 "소득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득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⑫ 소득자 성명(상호)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⑯ 지급건수(소득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⑩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로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점검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 5.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 6. ⑱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로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로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 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⑯ 지급 건수	⑰ (연간) 지급총액	⑱ 세 율	⑲ 소득 세	⑳ 지방소득 세	㉑ 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징 수 의 무 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 득 자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사 업 장 소 재 지					
	⑨ 성 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주 소					
⑫ 업종구분		※ 작성방법 참조				
⑬ 지 급	⑭ 소 득 귀 속	⑮ 지 급 총 액	⑯ 세 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⑰ 소 득 세	⑱ 지 방 소 득 세	⑲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⑩·⑪·⑫란에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⑬ 업종구분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저술가	940100	연예보조	940500	음료배달	940907	목욕관리사	940915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화가관련	940200	자문·고문	940600	방문판매원	940908	행사도우미	940916	대출모집인	940923
작곡가	940301	바둑기사	940901	기타자영업	940909	심부름용역	940917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배우	940302	꽃꽂이교사	940902	다단계판매	940910	퀵서비스	940918	방과후강사	940925
모델	940303	학원강사	940903	기타 모집수당	940911	물품운반	940919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가수	940304	직업운동가	940904	간병인	940912	병의원	851101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성악가	940305	봉사로 수취자	940905	대리운전	940913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940928
1인미디어 콘텐츠제작자	940306	보험설계	940906	캐디	940914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점검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는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 ⑬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0%, 봉사로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로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	--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함께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촌 특별세	⑬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 소득	㉒ 필요 경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2															
3															
4															
5															
6															
7															
8															
9															
10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⑯(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⑥연간 소득금액계(소득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득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0"을 각각 적습니다.
- ㉒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㉒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증서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 ㉓ 소득금액란은 ㉒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⑬ 업종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Table with columns for code (코드) and income type (소득구분). Rows list various income categories like copyright, patent, and other miscellaneous income with their respective codes.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 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Table showing required expenses (필요경비) for codes 71, 72, 73, 75, 76, 79, 80. Columns include acquisition date (수입시기) and the corresponding expense amount.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Table showing required expenses (필요경비) for code 77. Columns include total amount received (총과관련총사자가 받은 금액) and the corresponding expense amount.

귀속 연도 (Year of Attribution) field with a box for the year.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지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Management Number) field with a box for the number.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Main table for reporting income details. Columns include recipient number (일련번호), income category code (소득구분 코드), recipient name (소득자 성명), registration number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nationality (내·외 국인), reporting year (지급 연도), reporting month (지급 건수), total amount (지급총액), tax type (비과세 소득), required expense ratio (필요 경비), required expense amount (필요 금액), tax amount (세율), tax amount (소득세), local tax (지방 소득세), special tax (농어촌 특별세), and total amount (계). Rows are numbered 11 to 25.

IV.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종교인이 받은금액</th> <th>필요경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80%</td> </tr> <tr> <td>2천만원 초과</td> <td>1,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50%</td> </tr> <tr> <td>4천만원 초과</td> <td>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td> </tr> <tr> <td>6천만원 이하</td> <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td> </tr> </tbody> </table>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이하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이하</td> <td>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1,500만원 초과</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이하</td> <td>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1억원 초과액의 2%</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액의 15%	1,500만원 초과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액의 5%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액의 2%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6천만원 이하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액의 15%																															
1,500만원 초과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액의 5%																															
4,500만원 초과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액의 2%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인정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등)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좌동, 표준공제는 13만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		○	○
	특별	보험료(12%·15%,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만원)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0%, 25%, 35%)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별	정치자금기부금 등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3 종교인소득(연말정산) 관련 전산매체 변경내용

1. [산출세액] 10억 초과 구간 추가

항목명	항 목 설 명	오 류 기 준																		
C54	㉔산출세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종합소득과세표준</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억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① [C64] < 0 이면 오류 ② [C64] ≠ (종합소득과세표준[C63]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값) 이면 오류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2. [세액공제] 고행사랑기부금 추가

C81	·공제대상금액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행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①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1C만원 이하분) ②Min(종교인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 고행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500만원 - 고행사랑기부금공제대상금액(10만원이하분)) ·세액공제금액 ①고향사랑기부금 1C만원 이하분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②기부금액의 11C분의 100 세액공제(최대 90,909원) 기부금액의 10C분의 15 세액공제	① [C81]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81] ≠ 0 이면 오류 ③ [F9] = '43'인 [F15]의 합 = SUM([F15]) (ㄱ) SUM([F15]) ≤ 10만원 : [C81] > 90,909 이면 오류 (ㄴ) 10만원 < SUM([F15]) ≤ 5,000,000 : [C81] > 90,909 + (SUM([F15]-10만원)×15% 이면 오류 (ㄷ) SUM([F15]) > 5,000,000 이면 오류
-----	--	---

3.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변경

C70 ~C79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 공통 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음 * 기존 연금계좌 한도 초과시 ISA납입 금액의 10% 한도 추가(최대 300만원) ** 연금계좌 공제한도 차감순서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ISA퇴직연금> ISA연금저축 순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소득금액 [C33]</th> <th>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500만원 이하</td> <td>600만원(900만원)</td> <td>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td> <td>+ 300</td> <td>12%</td> </tr> </tbody> </table>	사업소득금액 [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4,500만원 초과	+ 300	12%	
	사업소득금액 [C33]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퇴직연금합산시 한도)	공제율								
4,500만원 이하	600만원(900만원)	15%									
4,500만원 초과	+ 300	12%									

C70	㉔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_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종교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① [C70]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0]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70]+[C72]+[C74] > 900만원 이면 오류
C71	㉔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금액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의12%(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① [C71]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1]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24] ≤ 4500만원 일 때 [C71] > [C70] * 15% 이면 오류 (ㄴ) [C24] > 4500만원 일 때 [C71] > [C70] * 12% 이면 오류
C72	㉔연금계좌-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_대상금액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종교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① [C72]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2]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70]+[C72]+[C74]> 900만원 이면 오류
C73	㉔연금계좌-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_공제금액	·연금계좌(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의 12%(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① [C73]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3]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24] ≤ 4500만원 일 때 [C73] > [C72] * 15% 이면 오류 (ㄴ) [C24] > 4500만원 일 때 [C73] > [C72] * 12% 이면 오류
C74	㉔연금계좌-연금저축_대상금액	·종교인이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① [C74]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4]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74] > 600만원 이면 오류
C75	㉔연금계좌-연금저축_공제금액	·연금계좌(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2%(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① [C75]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5] ≠ 0 이면 오류 ③ 거주자([C9]=1)일 때: (ㄱ) [C24] ≤ 4500만원 일 때 [C75] > [C74] * 15% 이면 오류 (ㄴ) [C24] > 4500만원 일 때 [C75] > [C74] * 12% 이면 오류
C76	㉔연금계좌-ISA 추가 만기 시 퇴직연금계좌 추가 납입액_납입금액	ISA 추가 만기 시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을 수록	① [C76]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6] ≠ 0 이면 오류
C77	㉔연금계좌-ISA 추가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 추가 납입액_납입금액	ISA 추가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 추가납입액을 수록	① [C77]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6] ≠ 0 이면 오류

C78	㉔연금계좌-ISA 추가 만기 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추가납입액-공제대상금액	ISA계좌 추가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세액공제는 추가납입액에 공제율 1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1.[C78] < 0 이면 오류 2.비거주자([C7]= '2')인 경우: [C78] ≠ 0 이면 오류 3. [C78] > (ISA 공제대상③+④) 금액 계산값 이면 오류 ①퇴직연금잔여한도: 퇴직연금한도+min(*ISA연금계좌납입액*10%,300만원)-([C70]+[C72]+[C74]) ②연금저축잔여한도: 연금저축한도+min(*ISA연금저축납입액*10%,300만원)-[C74] ③ISA퇴직연금 대상금액 : min(① , **ISA퇴직연금 납입액) ④ISA연금저축 대상금액 • 퇴직연금(ISA퇴직 포함)이 있을 경우 : min(① -③, ② , ISA연금저축 납입액) • 연금저축(ISA연금저축 포함)만 있을 경우 : min(②, ISA연금저축 납입액) * ISA연금계좌납입액: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의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합계: [C76] + [C77] ** ISA연금저축납입액: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의 연금저축(소득의 납입금액 합계 : [C77] *** ISA퇴직연금납입액: 연금·저축등 소득·세액명세의 연금저축의 납입금액 합계 : [C76]
C79	㉕연금계좌-ISA 추가 만기 시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 추가납입액-공제금액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금액의 12%(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① [C79] < 0 이면 오류 ② 비거주자([C9]='2')일 때: [C78] ≠ 0 이면 오류 ③ [C24] ≤ 450만원인 경우: [C79] > [C78] × 15% 이면 오류 ④ [C24] > 450만원인 경우: [C79] > [C78] × 12% 이면 오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6)]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소득자 구분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 / 비거주자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내·외국인	
소득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내국인 / 외국인	
종교인 소득		⑦ 성명	⑧ 사업자등록(고유)번호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소득금액		⑨ 주민등록번호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⑩ 주(현)					⑮ 비과세소득
⑩ 중(전)					
⑯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⑯)		⑯ 종교인소득 (14)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 (⑯-⑰)	
인적공제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기본공제		④ 결정세액		동여존특별세	
② 배우자		④ 총(전) 근무지		계	
② 무양가족 (명)		④ 중(현) 근무지			
② 경로세대 (명)		④ 차감 납부할 세액			
② 장애인 (명)					
② 부녀자					
② 한부모가족					
② 연금보험료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② 기부금(이월분)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② 종합소득공제 계		세무서장 귀하			
②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②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②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④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 방법

- 거주지역과 거주지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전화번호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징수의무자"란의 "⑤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일·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 "⑮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를 적습니다.
- "⑱ 소득공제 등 종합하고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④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관리번호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소득자 구분	
① 귀속 연도	년	[] 종교인소득 지급 명세서(연말정산용)			거주구분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자 / 비거주자
					내·외국인
					거주지역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역코드
징수 의무자	② 종교단체명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소득자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종교인 소득	⑩ 발생처 구분	⑪ 종교 단체명	⑫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⑬ 발생기간 (연·월·일)	⑭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주(현)				
	종(전)				
소득 금액		⑯ 종교인소득(⑭)		⑰ 필요경비	
				⑱ 소득금액(⑯-⑰)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⑱)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⑳ 본인	㉑ 소득공제 등 종합합산도 초과액		㉒ 결정세액	
	㉓ 배우자	㉔ 종합소득과세표준		㉕ 종(전) 근무지	
	㉖ 부양가족(명)	㉗ 경로우대(명)		㉘ 주(현) 근무지	
	㉙ 장애인(명)	㉚ 자녀세액공제		㉛ 차감 납부할 세액	
	㉜ 부녀자	㉝ 연금계좌 세액공제			
	㉞ 한부모가족	㉞ 연금계좌 세액공제			
㉟ 연금보험료공제	㉟ 기부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㊱ 기부금(이월분)	㊱ 기부세액공제		년 월 일		
㊲ 종합소득공제 계	㊲ 표준세액공제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㊳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㊳ 표준세액공제		세무서장 귀하		
㊴ 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㊴ 외국납부세액공제				
㊵ 인적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작성 방법

1. 거주지역과 거주지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 국가코드: 국제전화페이지→국제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⑤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⑭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5. "⑯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외결기구의 외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㉑ 소득공제 등 종합합산도 초과액"란은 종교인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2)) 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조합 등"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㉒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㉛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9.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기부금명세서

① 인적사항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 소재지	(전화번호 :)
소득자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⑦ 코드	⑧ 기부내용	기부처		⑪ 기부자			기부 명세							
		⑨ 상호(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⑫ 합계(⑬+⑭)	⑬ 공제대상 기부금액	⑭ 기부장 신청액	⑮ 공제 제외 기부금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3	40	41	42	10, 40, 41	50
합 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⑯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⑱ 공제대상 금액(⑯-⑰)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작성방법

* 이 서식 제1쪽의 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⑦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특례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43 "
 - 라.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마. 일반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 사.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 ⑧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⑨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 ⑩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㉔ 상호(법인명)란과 ㉕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㉖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⑬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30" "40" ~ "43")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⑭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 ⑮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 ⑯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㉔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급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 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급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3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	10년	10년

-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 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㉖ 기부금액, ⑰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㉔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 12. 31. 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V. Paperless 연말정산 안내

1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및 API 소개

- 국세청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종이 문서 출력, 제출, 보관에 따른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Paperless 연말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이하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소득공제금액 및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추출되어 연말정산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자동추출 연계 프로그램」(이하 전자문서 API)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설치해야 합니다.

2 전자문서 API 이용 안내

- 전자문서 API는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포털 바로가기 → (회사용) 전자문서 API 자료실 (로그인 필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반드시 최신 버전 (64비트용: 자료실 번호 53, 32비트용 : 자료실 번호 24)의 전자문서 API 적용 요망

- 시점인증(진본확인) 서버인증서 변경과 관련하여 V 2.03으로 갱신함('21.10.2)

- 전자문서API에서 추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정의서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매년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0년 귀속 종이 없는 연말정산 전자문서 정의서

< 「종전 연말정산」과 「Paperless 연말정산」 비교 >

구 분		종전 연말정산	Paperless 연말정산
근로자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등록
	그 외 자료	▪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종이문서로 제출	▪ 좌 등
	신고서 작성	▪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집한 자료를 수동 입력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등록(업로드)과 동시에 연말정산 서류 자동 작성 ▪ 그 외 종이 영수증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 입력
회사	소프트웨어 설치	▪ 관련 없음	▪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국세청 제공 '전자파일 자동추출 연계 소프트웨어'(API)를 설치
	영수증 금액 대조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간 상호 대조 필요	▪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자료의 금액 대조 불필요 ▪ 공제자료 외 종이 영수증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금액과 상호 대조 필요
	공제요건 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별 요건 충족 확인	▪ 좌 등
	종이사용	▪ 전체 근로자 1억 5천장 종이 사용	▪ 매년 90억원 종이 사용 비용 절감
	문서보관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종이문서로 보관	▪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관 ▪ 그 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보관

3 전자문서 API 종류

□ 위변조 여부 검증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 데이터 추출용 API

-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추출용 API
- 제공형태

OS	제공형태	비고
Unix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C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의 경우 서버기종, OS종류, 컴파일러 버전 등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경 확인 후 제한적으로 제공가능. 가급적 Java사용 권고
Windows	dll 파일	dll 및 관련 파일들
	Java(Jar파일)	JDK 1.4 이상 설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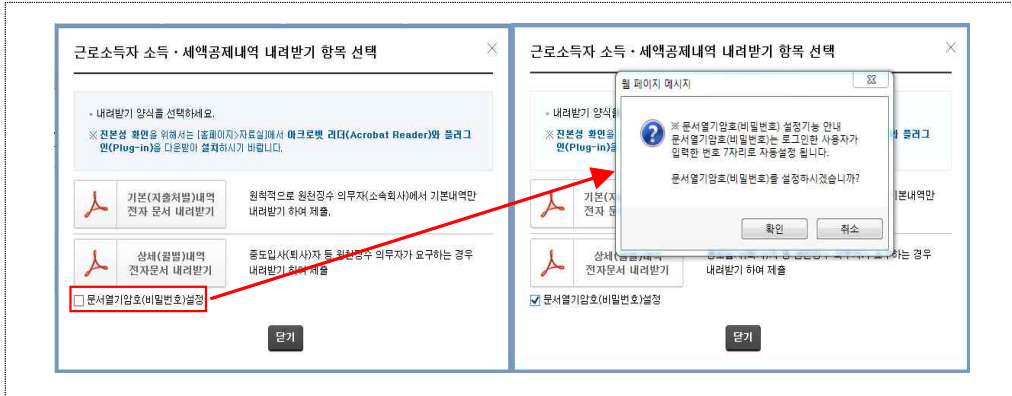
- 추출 데이터는 XML과 SAM 두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나, 세법 변경에 의한 형식수정 등에 유연한 XML 사용 권고

※ XML, SAM 정의서도 [전자문서 API]와 함께 게시

4 비밀번호가 설정된 전자문서 파일 활용

□ 근로소득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를 다운로드 시 선택사항으로 문서열기암호 설정 가능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7자리로 설정



□ 비밀번호가 설정된 소득·세액공제증명 전자문서는 비밀번호 확인 후 열람 및 데이터(XML or SAM) 추출 가능

5 연말정산 공제자료 전자점자 문서 제공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자료 문서를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이용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제자료 전자점자 파일(.BRL)을 제공

※ 점자 규정, 점자도서 점역 및 출판지침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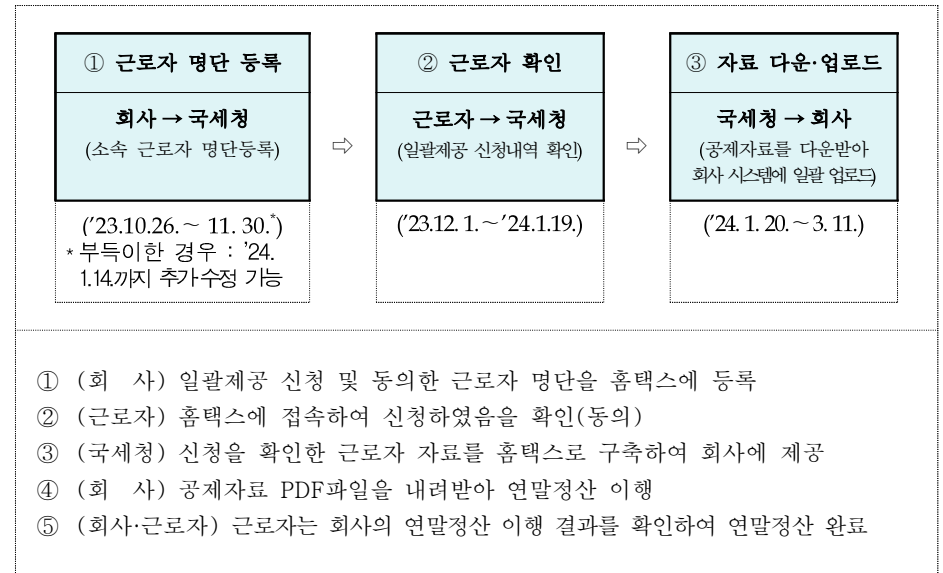


6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 제공



-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 공제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일괄 작성·제출



□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 등록 ('23.10.26~'23.11.30)

- 사업자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메뉴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근로자명단을 등록
 - ① 화면에서 직접 입력, ② 국세청이 제공한 엑셀서식에 입력한 후 업로드, ③ 전년도 명단을 동일하게 등록
 -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제공 서비스 ⇨ (회사용)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일괄제공될 압축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가능

- 기장대리 세무대리인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

- 근로자의 공제자료는 PDF 외 XML형식으로도 회사에 제공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원천정보화팀에 미리 신청(044-204-2573, 2577)

□ 근로자의 홈택스 확인(동의)하기 ('23.12.1~'24.1.19)

- 회사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근로자로부터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 1회 홈택스를 통해 확인**
 -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동의를 철회해야함
 -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용)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
 - ※ (모바일)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자료 확인(동의)
- 회사에서 명단제출된 근로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할 때 확인(동의)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자동 안내함

□ 일괄제공 PDF 내려받기 ('24.1.20~'24.3.11)

- 홈택스에서 **1.19.까지 신청을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 별로 묶어 1회 생성**하고, 압축파일을 1.20.부터 홈택스에 제공
 -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용)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기
 - ※ 일괄제공 자료 생성이 많을 경우, 회사에 따라 1~2일 지연 제공될 수 있음
- 소득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선택한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공제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선택한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 회사가 세무대리인(기장대리)에게 일괄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인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음 (신고대리는 불가)

※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내려받기



□ 연말정산 공제자료 서비스와 일괄제공 서비스의 비교



□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의 비교

		간편제출	일괄제공
회사	이용 기간	1.3. ~ 3.11.	10.26. ~ 1.14.(등록) ~ 3.11.(관리 등)
	회사 명단 등록	매년 등록	매년 등록
근로자	이용 기간	1.18. ~ 3.11.	10.26. ~ 1.19.
	홈택스 확인 절차	매년 제출	최소 1회 확인(동의)
	제공정보 선택	선택한 정보만 회사에 제출	선택 불가
	제출 취소	제출자료 회수 가능	회수 불가능

□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이용방법

- 연말정산 서비스를 부서별(그룹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입하며, 반드시 사업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대표사업장ID를 가진 사용자(주사용자)가 신청한 아이디에 대해 승인함

[부서사용자ID 신청]

- ①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클릭



- ② [부서사용자ID 신청] → [연말정산자료제출ID 신청하기] 클릭



- ③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 동의함 체크



④ [사업자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 후 확인 버튼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 신청하기

신청자 정보

성명 실명인증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아이디 신청정보

부서사용자 유형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사용자 아이디 중복확인 ※ 영문(대소문자구분됨) 또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6~20자리 (예) abcd_1234와 ABCD_1234는 다른 아이디임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확인 ※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15자리로 설정합니다. ※ 숫자 키보드 위의 특수문자[~!@#\$%^&*~] 만 가능합니다.

부서명

휴대전화번호 010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⑤ 주사업자ID로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관리 클릭

My홈택스

HomeTax, 국세홈택스

개인사업자 테스트버전_님, 안녕하세요.

부서사용자 관리

원천징수

납부

고지

환급

재납

⑥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 → 조회된 목록을 확인 후 승인처리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 담당자 변경 시 해당 행을 클릭하여 기존 부서사용자의 아이디 상태를 '탈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사용자유형 상태 담당자명

부서사용자유형	담당자명	아이디	부서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상태	변경일시	번호지정
과세자료제출	테스트게인3	ngbrother12		010-1234-1234	1@chollian.net	사용	2020-08-12 15:12:54	

<참고> 편리한 연말정산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 제공
 - * 10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모바일에서는 자주 찾는 메뉴의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③ 연말정산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모바일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회사용)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 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 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근로소득(세법)	백신기	044-204-3349	baek2004@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김세라	044-204-2573	sera1004@nts.go.kr
편리한 연말정산	구세윤	044-204-2580	qqwwee7096@nts.go.kr
근로소득 직접작성	김하연	044-204-2581	khy0202@nts.go.kr
근로소득 전산매체	서성현	044-204-2579	shseo8746@nts.go.kr
종교인소득	김지선	044-204-2578	shine2822@nts.go.kr
사업소득(연말정산)	이세나	044-204-2576	sena1012@nts.go.kr
사업소득·기타소득	김지선	044-204-2578	shine2822@nts.go.kr